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인사혁신처장

1.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9. 11. 21.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외무공무원법」 제27조의 정년에 해당하는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단위 (붙임1.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참조)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2019.11.21. 예정)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2019. 11. 21.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직렬(류)별(일반행정, 시설조경 등)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경력은 포함
 - ※ 군법무관·군의원·수의장교 의무복무기간(단기)은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인정
 - ※ 서류전형 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자격증 요건에 한함)

- '관리자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력을 의미함

< 부서단위 책임자 >

-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
 - i)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인정하지 않음(임시조직·TF팀 등)
 - ii)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 ④ **(증빙의무)** ①~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조회과정에서 위 사항(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학위·자격증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 예정일(2019. 11. 21. 예정)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기 타 】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9. 4. 26.)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2016. 4. 25. 부터 2019. 4. 25. 까지 위의 【경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19. 8. 22. 예정)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7. 8. 23.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19. 8. 22.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최종시험 예정일(2019. 11. 21. 예정) 전에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함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 사전등록 방법 : 본 공고문 8페이지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참고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TOEFL(응시 가능한 모든 국가의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의 경우만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붙임1] 참조**

2.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합니다.
 - 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에서 문제유형 확인 가능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응시요건(경력·학위·자격증)을 두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와 해당 응시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당초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서류전형

-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합니다.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서류전형 기준 >

- ①공무원 적합성(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②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③직무성과 ④우대요건(보유여부 판단)

-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1·2·3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 2015.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 (2019. 8. 22.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으로 기재된 선발단위에 한하여 우대됩니다.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평정기준 >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불합격 기준 >

-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3.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2019. 7. 10.(수)	2019. 7. 20.(토)	2019. 8. 14.(수)
서류전형	-	-	2019. 10. 16.(수)
면접시험	2019. 10. 16.(수)	2019. 11.19.(화)~21.(목)	2019. 12. 27.(금)

※ 시험일정·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만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기 간 : 2019. 6. 11.(화) 09:00 ~ 6. 17.(월) 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 취소마감일 : 2019. 6. 20(목) 18:00

안 내 사 항

- 응시수수료(1만원)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상세한 원서접수 방법 및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증빙서류 제출 포함)에 대한 안내는 6.10.(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 메뉴에 공지 예정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인터넷으로 등록

- 대상자 : 어학성적이 우대요건으로 설정된 선발단위에 응시하며, 2017. 8. 23. 이후 실시되어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19. 8. 22.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TOEIC, TOEFL, TEPS, G-TELP), 제2외국어(SNULT, 신HSK, JPT) 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 인증받으려는 응시자
 -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어학성적은 서류전형 등록 시에도 등록 가능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
- 기 간 : 2019. 5.1-10. / 6.1-10. / 7.1-10. / 8.1-10.에 등록가능
 - ※ 세부 안내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공지사항 → 「2019년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2018.11.30. 공고) 참조

다.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 인터넷으로 등록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등록
- 기 간 : 2019. 8. 14.(수) 09:00 ~ 8. 22.(목) 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내 용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경력,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이력사항 등록 및 추가서류 첨부 제출
 - 서류전형 등록 시 기재·제출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항목은 별도로 표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표절정도에 따라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서류전형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라.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 법 : 등기우편 제출(방문접수 불가)
- 기 간 : 2019. 10. 17.(목) ~ 10. 24.(목) ※ 10.24.(목)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접수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5급 민간경력채용 담당)
 - 내 용
 - 경력, 학위, 자격증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최종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 기관에서 보관)
-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5.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6. 기타 참고사항

가.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사무관, 전문경력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관)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호봉 책정 관련 안내 >

-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습니다.

라. 선발단위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예정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2020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천 또는 진천)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문의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 201 - 8375, 8374

7. 선발단위별(직류/직무분야) 선발예정인원 : 80명

※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확인

《직렬(류)별》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일반행정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고용노동부	2명	501
		교육부	1명	502
		인사혁신처	1명	503
		통일부	1명	504
법무행정	행정사무관(법무행정)	법제처	2명	505
재경	행정사무관(재경)	국무조정실	1명	506
고용노동	행정사무관(고용노동)	산업통상자원부	1명	507
조선	공업사무관(조선)	방위사업청	1명	508
시설조경	시설사무관(시설조경)	국토교통부	1명	509
		환경부	1명	510
외교통상	5등급 외교통상직	외교부	2명	511

《직무분야별》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에너지·산업분야 국제협력	행정사무관(일반행정)	산업통상자원부	1명	512
공정거래 사건 및 정책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공정거래위원회	2명	513
관세분야 법무 및 쟁송	행정사무관(재경)	관세청	1명	514
국세분야 법무 및 쟁송	행정사무관(재경)	국세청	3명	515
국세분야 쟁송 및 조사심의	행정사무관(재경)	국세청	2명	516
전파업무 관련 법제	행정사무관(법무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	517
보건복지분야 법제 및 송무	행정사무관(법무행정)	보건복지부	1명	518
건강보험분야 법제 및 송무	행정사무관(법무행정)	보건복지부	1명	519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시험·인증 분야 법제 및 송무	행정사무관(법무행정)	산업통상자원부	1명	520
외무분야 법무행정	5등급 외교통상직	외교부	2명	521
여성인권 조사 및 제도 개선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국가인권위원회	1명	522
고용차별 관련 조사 및 제도 개선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국가인권위원회	1명	523
국방분야 온라인 홍보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국방부	1명	524
수중문화재 조사선 운용 및 관리	해양수산사무관(선박항해)	문화재청	1명	525
사진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재 사진촬영	학예연구관(학예일반)	문화체육관광부	1명	526
청사시설관리	시설사무관(건축)	소방청	1명	527
R&D정보 조사·관리·분석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	528
국토위성시스템 운영	시설연구관(토목)	국토교통부	1명	529
축산환경자원	농업사무관(축산)	농림축산식품부	1명	530
농촌공익가치평가	농업연구관(농업경영)	농촌진흥청	1명	531
스마트팜 연구	농업연구관(농업환경)	농촌진흥청	1명	532
의무	의무사무관(일반의무)	법무부	4명	533
법의부검	의무사무관(일반의무)	행정안전부	7명	534
약무	약무사무관(약무)	법무부	1명	535
산업안전·보건	보건사무관(보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	536
보건의료정책	보건사무관(보건)	보건복지부	3명	537
구강정책	보건사무관(보건)	보건복지부	1명	538
한의학정책	보건사무관(보건)	보건복지부	1명	539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응시코드
감염병 역학조사	보건연구관(공중보건)	보건복지부	4명	540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감염병 역학조사	보건연구관(공중보건)	보건복지부	1명	541
국립제주검역소 감염병 역학조사	보건연구관(공중보건)	보건복지부	1명	542
희귀질환 관리·연구	보건연구관(공중보건)	보건복지부	1명	54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연구	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청	1명	544
기계분야 기술표준정책	공업사무관(기계)	산업통상자원부	1명	545
전기분야 기술표준정책	공업사무관(전기)	산업통상자원부	1명	546
화공분야 기술표준정책	공업사무관(화공)	산업통상자원부	1명	547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업연구관(전자)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	548
거래공정화정책	행정사무관(일반행정)	중소벤처기업부	1명	549
전기분야 화재예방연구	공업연구관(전기)	소방청	1명	550
화학사고 예방·심사	공업연구관(화공)	환경부	1명	551
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	전문경력관 가군	환경부	1명	552
화학물질 배출조사	전문경력관 가군	환경부	1명	553
화학물질 등록평가	전문경력관 가군	환경부	1명	554
빅데이터 분석	전산사무관(전산개발)	행정안전부	1명	555
공개SW 정책	공업연구관(전자)	행정안전부	1명	556
통계분석 및 관리	통계사무관(통계)	고용노동부	1명	557
국세통계	통계사무관(통계)	국세청	1명	558